

## 계룡시조례 제 호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계룡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등

**제3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계룡시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 보관에 관하여는 계룡시 재무회계 규칙에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①이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영 제20조의2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물등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등에 한 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2. 영 제20조의2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시설등(시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시설등에 한 한다)의 안전진단
3.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 주택으로의 이주지원

4.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5.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6. 기타 시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룡시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용자할 수 있다
1. 영 제20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 ③ 제2항에 의한 융자금의 신청절차, 제출 서류 등과 자금의 지원한도액, 융자 기간, 상환, 이자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재난관리업무담당이 간사가 된다.

**제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기금의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